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청소행정과)

| | |
|------|---|
| 의안번호 | 제254호 |
| 제출자 | 김육영 의원 외 12명(2024. 2. 1.) |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검토 | 전문위원 정진만 |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의2)
- 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 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윤주 의원)의 활동 결과에 따라 김육영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¹⁾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1)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을 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의2 에서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그 결과가 공개되도록 하는 평가원칙을 신설함.
- 안 제16조에서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잘못된 표현을 개정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원칙을 규정하고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